

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함

○ 신규면허와 면허변경에 대한 비과세

①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·이전 기타 등록

※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정기분 면허제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

② 광업권의 설정·변경·이전 기타 등록

③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

④ 군납업·건설업의 면허

※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모두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, 면허세 납세의무는 있음

○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에 대한 비과세

①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

② 법령의 개정,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면허
·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·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

·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

③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면허

·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

· 지정업무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병원·의원(조산원을 포함한다)의 면허

·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(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 한한다)의 면허

④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